

사단법인 한국에너지하베스팅협회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하베스팅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Energy Harvesting Association (KEHA)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 76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에너지하베스팅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활성화 하여 회원의 성장과 함께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하베스팅 산업 체질 함양
 - (1) 글로벌 수준의 기술·기업 육성
 - (2) 정보교류 플랫폼 육성
 - (3) 회원사 공동연구개발 및 협력사업 강화
2. 에너지하베스팅 산업 생태계 조성-활성화
 - (4) 산·학·연·관·민 연계 산업활성화 정책연구
 - (5) 산업 인증-검증-보증, 표준화 정책연구
 - (6) 개발-검증-적용 기술의 사업화 정책연구
3. 글로벌 공동 개발-사업 협력체계 구축
 - (7)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 (8) 글로벌 협력사업화
 - (9) 글로벌 시장 개척 정책지원사업

4. KEHA 역량 강화
 - (10) 회원사간 유대강화
 - (11) 산업 전문지식 교류 활성화
 - (12) 협회 수익사업 개발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산업 관련 기업으로 한다.
- ③ 특별회원은 산업 관련 협회, 조합, 연구소 및 관련기관으로 한다.
- ④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개인으로 한다.
- ⑤ 회원의 자격 및 기타 회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⑥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모든 권리를 균할하며 본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협회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③ 정회원은 기업회원의 대표자 1인을 선출하며 대표자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④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을 준수한다.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 ③ 회비 및 제부담을 납부한다.

1. 본회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2.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특별회원(비영리법인), 명예회원의 경우 회비를 면제한다.
4. 회원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기타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연회비 효력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비의 납부 방법 및 기한은 사무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견책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2. 본회의 사업수행을 무단히 방해하였을 때
 3. 본회의 정관, 제규정, 제반의결사항을 위반한 때
 4. 회비납입 등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이 사 : 5인 이상, 이사 중에서 2인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회장, 부회장 포함)
 3. 감 사 : 2인 이하
- ② 이사의 수가 제1항의 제2호의 상한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잔여 인원수만큼 준이사를 둘 수 있다. 준이사는 내부적으로 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③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약간 명은 총회의 의결로서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상임이사)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기관)의 해당 직에서 퇴임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원의 직무를 승계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다. ③ 비상근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고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 개최 일에 만료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두지 않는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

- ①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를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총회

제18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석회원 3분의 10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석회원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총회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정기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⑤ 회장은 다음 각회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의사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② 협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⑤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⑥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⑦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 ⑧ 지부·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⑨ 상근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 (수입금)

① 본 협회의 수입은 정부출연금, 회원의 납입금(회비 포함), 찬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수입, 차입·융자금, 이월금으로 하며, 지출은 사업비, 기타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한다.

② 회원의 납입금(회비 포함), 찬조금 및 기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32조 (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

②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3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계획서

② 수지예산서

제34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의 보수를 지급 받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 (사무국)

-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보칙

제38조 (법인해산)

-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이상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에너지하베스팅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한다.